

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2. 11. 11 조례 제234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소송비용”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, 인지대, 송달료, 감정료,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.

1.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
2. 「지방자치법」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“상임위원회 등”이라 한다)에서 의정활동(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)을 수행하는 경우
3.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용인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
4.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4조(소송비용 지원)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용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소송비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소송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할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 별로(형사사건으로 고소, 고발된 경우에는 기소 전 수사 단계를 별도의 심

급으로 보고 지원한다) 피소의 경위와 내용, 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의원이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에서 「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(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심급 당 55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) 통상적인 변호사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⑤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.

제5조(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용인시의회에 용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
2.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
3.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
4.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

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.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1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2명(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)
2. 용인시의회 법률고문 1명
3.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
4.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

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 또는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 또는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,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의원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.
- ⑧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·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

제9조(소송결과 제출)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(형사사건의 경우는 기소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

하여야 한다.

제10조(소송비용 환수)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.

1.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
2.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(선고유예, 집행유예를 포함한다)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
4.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의 회수를 결정하는 경우 피소에 이르게 된 경위, 위법행위의 내용, 재판이나 처분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회수할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④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의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 반환에 동의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 약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비밀유지의무)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전 소송이 제기되거나 고소, 고발된 사건으로서 시행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당사자인 의원에게도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소송 결과 보고서

| 사 건 명 | 법원 | | | 사건 |
|--------------|---|--|-------|----|
| 당 사 자 | 원 고 | | 소송대리인 | |
| | 피 고 | | 소송대리인 | |
| 판결결과 | | | | |
| 판결일자 | | | 소송물가액 | |
| 판결주문 및 이유 | | | | |
| 첨 부 | 1. 판결문 사본(민사사건의 경우) 2. 판결문 사본 또는 사건처분결과통지서(형사사건의 경우) | | | |
|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| | | | |

[별지 제3호서식]

이행 약속서

소송비용을 지원 신청한 본 의원은 「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 규정에 따라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「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」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를 약속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인 또는 서명)

용인시의회 의장 귀하